

◆ D-18 법정공휴일에도 근무하면 휴일근로수당으로 50%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는가?

근로기준법상의 유급휴일은 전주간을 만근한 것에 따른 주휴일과 근로자의 날이 있음.

유급주휴일제도는 계속근로로 인한 피로를 회복시켜 재생산 활동에 임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취지가 있으므로, 전주간에 만근하지 않아도 유급(일당지급)으로 휴무토록 하는 것이며, 만약 유급휴일에 근로한 경우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하여야 함.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국·공휴일은 이를 취업규칙에서 유급휴일로 정한 경우에는 유급주휴일에 마찬가지로 취급되어야 함.